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고객님을 위한 3-Care Plus 프로그램 안내문 (2020년 4월 30일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한 고객)

●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3-Care Plus 프로그램이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에서 고객님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운행 중 차대차사고가 아닌 사유로 전면유리, 사이드미러, 타이어 및 타이어휠이 파손되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지정 서비스센터를 통해 해당 부품을 교체하시면 보상한도 내에서 일정 수리비용을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 3-Care Plus 보상기준

행사기간 중 승용 신차 구매를 위한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의 금융상품(리스/할부) 고객님께서 보상기간 내 해당 차량의 운행 중 차대차사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전면유리(Windshield), 사이드미러(Wing Mirrors), 타이어(Tires) 및 타이어휠(Wheel)이 파손되었을 경우, 보상한도 내에서 사고당 각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내역서의 총비용 중 고객부담금을 제외한 실손비용을 보상한도 내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 3-Care Plus 보상내용

① 보상기간

개별고객이 금융계약으로 차량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1년 혹은 보상기간 중 주행거리 12,000km 선도래 조건

② 보상한도

	A,B,C,CLA,GLA	E,GLC,CLS	S(Maybach 포함), GLE,GLS,G,SL,GT,SLC	연간보상범위	사고횟수
전면유리	1,400,000	1,800,000	2,400,000	1장	1회
사이드미러	1,000,000	1,200,000	1,500,000	1개	1회
타이어	1,000,000 (개당 50만원)	1,200,000 (개당 60만원)	1,400,000 (개당 70만원)	2개	1회
타이어휠	1,000,000 (개당 50만원)	1,200,000 (개당 60만원)	1,400,000 (개당 70만원)	2개	1회
총 한도액	4,400,000	5,400,000	6,700,000		

Maybach, AMG,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승용 전차종에 적용됩니다.





③ **고객부담금**

총 수리비용 청구액 X 20% (자동차보험 보상처리기준을 따름)

[전면유리 수리 예시 - E-Class]

총 수리비용 120 만원 : 고객부담금 24 만원 제외한 96 만원 환급

총 수리비용 200 만원 : 고객부담금 36 만원(보상한도 내 자기부담금, 180 만 * 20%) 및
보상한도 초과분 20 만원(200 만 - 180 만)을 제외한 144 만원 환급
(고객 총 부담금 56 만원)

● **각 부품별 보상조건**

- ① 전면유리의 경우,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앞유리 표면 상에 직경 1cm이상의 흠 혹은 10cm이상의 실금 이상의 파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사고처리 시 파손부분 실측자료 첨부)
- ② 사이드미러의 경우,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사이드미러의 정상 작동 불능 및 오작동 이상의 외부 파손이 발생한 경우 보상합니다.(파손 구품 반납)
- ③ 타이어의 경우, 운행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타이어가 파손되어 차량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보상합니다.(일반적인 펑크가 아닌 타이어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④ 타이어휠의 경우, 상기 타이어의 파손으로 인하여 동시에 휠에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타이어와의 접촉 부위가 원형기준 3cm이상 파손(때임/변형) 혹은 휠 표면 공간을 포함하여 연속된 스크래치가 15cm이상 발생한 경우에 보상합니다. - 직선형태의 스크래치가 아닌 경우, 해당 스크래치의 양끝 지점을 잇는 직선길이를 기준으로 함)

● **보상 프로세스**

- ① 고객 차량 사고 발생 시 공식 서비스 센터 입고
- ② 고객 혹은 영업사원이 3-Care Plus 프로그램으로 처리요청 시 우선 접수요청
: (주)다다이즈로 접수신청 (전화 : 1644-074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Jabaxb)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연락 불필요
- ③ (주)다다이즈에서는 해당 사고가 3-Care Plus 프로그램 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자동차보험과 중복/복합보상 불가 등 필요사항 서면[팩스/이메일]고지)
- ④ 3-Care Plus 프로그램 보상 대상인 경우, 필요서류 안내
- ⑤ 보상담당직원 파손부위 실측사진 최종 확인 후 수리진행
- ⑥ 수리완료 후 고객 혹은 영업사원에 수리완료 통보





- ⑦ 고객은 우선 본인 비용으로 총 수리비용을 완납 후 차량 인수
- ⑧ 서비스센터 혹은 고객은 (주)다다이스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추가 서류 전달
 - ☞ 해당 서류 접수 후 보상환급을 위한 최종 심사
- ⑨ 최종 보상환급액은 매주 혹은 격주로 고객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
(위 ⑧의 최종 서류 제출 후 5일 이내 고객 지정계좌로 지급예정)

●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①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등을 목적으로 운영 되는 차량 및 경주용차량 등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 견인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객의 고의로 생긴 손해
- ③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 포함)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손해보험의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중복보상 금지)
- ④ 견인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 비용손해
- ⑤ 퓨즈교환, 전조등교환, 오일보충, 배터리충전, 타이어펍크수리 등 간단한 현장조치에 따른 비용손해
- ⑥ 잠금장치해제,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긴급구난, 정기검사대행, 폐차대행 및 기타 차량 정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손해
- ⑦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발생한 비용손해
- ⑧ 피보험자동차의 구조 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견인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 발생한 비용손해
- ⑨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⑩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⑪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⑫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⑬ 동 프로그램에서 보상하는 부품 중 한 가지 이상과 동 프로그램에서 보상하는 부품을 제외한 다른 부품과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당 프로그램은 서비스 운영상의 사유로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처리에 필요한 서류 미비 등 고객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가 및 처리 지연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다다이스(전화 : 1644-0746 / 카카오톡 : https://pf.kakao.com/_Jabaxb)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